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기업 모집 공고

예비창업자와 우수기업에 대한 종합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포구 상암동 DMC 단지 내에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건립하고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이 위탁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인 「마포비즈니스센터」에 입주할 기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예비)기업인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23년 7월 12일

□ 모집개요

가. 모집내역 : 창업보육실 총 4개실

구 분	모 집 내 용	비 고																				
입주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3년 이내인 기업 / 개업연월일 기준 ※ 예비창업자의 경우 3개월 이내 창업 필수(사업자등록증 제출) · 사업목적과 아이템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업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2022-36)호에 속하는 업종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입주신청일 기준																				
우대사항	· 마포구 관내기업 / 거주자 또는 사업장 소재지																					
모집 수	· 총 4개실 <table border="1"><thead><tr><th>구 분</th><th>호 실</th><th>임대면적</th><th>전용면적</th></tr></thead><tbody><tr><td>1</td><td>410호</td><td>59.9㎡</td><td>29.6㎡</td></tr><tr><td>2</td><td>503호</td><td>121.9㎡</td><td>60.2㎡</td></tr><tr><td>3</td><td>504호</td><td>125.3㎡</td><td>61.9㎡</td></tr><tr><td>4</td><td>509호</td><td>60.9㎡</td><td>30.0㎡</td></tr></tbody></table> ※ 희망 보육면적 1지망, 2지망 선택가능 ※ 최고점을 획득한 기업이 입주 포기 시 차순위자에 희망 보육실 선택과 관계없이 입주기회 부여	구 분	호 실	임대면적	전용면적	1	410호	59.9㎡	29.6㎡	2	503호	121.9㎡	60.2㎡	3	504호	125.3㎡	61.9㎡	4	509호	60.9㎡	30.0㎡	-
구 분	호 실	임대면적	전용면적																			
1	410호	59.9㎡	29.6㎡																			
2	503호	121.9㎡	60.2㎡																			
3	504호	125.3㎡	61.9㎡																			
4	509호	60.9㎡	30.0㎡																			
접수기간	· 2023. 7. 12.(수) ~ 2023. 7. 26.(수) / 15:00까지																					
입주예정일	· 2023년 8월 초	변동가능																				
입주기간	· 최초 입주 계약 3년, 이후 1년 단위로 연장 가능 / 최대 5년 입주가능 ※ 제조 또는 영업장으로는 활용 불가능, 사무실 형태로만 운영	-																				
입주부담금	· 임대료 : 약 4,730원/㎡(VAT별도) *1년 선납 · 임대보증금 : 70,000원 × ㎡ · 시설관리비 : 월 3,400원 × ㎡ · 공공요금 : 사용량에 따라 부과(공용+전용) ※ 각 입주부담금은 임대면적(㎡)을 곱한 금액	마포구 시설관리 공단																				
의무사항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240일(약8개월) 시점에 현금/주식으로 성공부담금 증여 ·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을 것 · 본점 주소를 마포창업복지관으로 이전 / *필수사항 · 입주 기간 중 국가의 지원을 받는 다른 창업지원기관에 중복 입주할 수 없음																					
센터 소재지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마포창업복지관 / 4층, 5층, 6층																					

※ 모집내역 및 입주예정일은 센터 사정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 보육실 공간만 임대(업무 공간 구성에 필요한 책상, 의자 등 사무실 집기는 별도 제공하지 않음)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사행산업 등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그 밖에 경제 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 **입주 부적격 기업 - 마포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규정**

[제10조] - (입주 대상자)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정 제13조에 의한 심사를 생략하고 승인대상자에서 제외한다.

1. 사법기관으로부터 기소중지 중인 자.
2.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3. 휴·폐업 중인 자.
4. 폐수, 소음, 진동, 악취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 자.
5.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정 또는 운영하는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
6.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창업보육센터 입주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성공부담금**

구 분	성공부담금 산정 방법	납부 방법
개인사업자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성공부담금 산정시점 전월까지 발생한 총 매출액의 3%로 산정	현금
법인사업자	· 임대차 기간 개시일로부터 240일이 경과되는 시점의 자본금 기준으로 산정 - 1억원 미만 : 200만원 - 1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 300만원 -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 400만원 - 5억원 이상 : 500만원	현금

- 납부형태 : 현금 또는 주식
- 납부방법 : 서강대학교(50%) / 마포구청(50%)로 각각 현금 납부 진행
- 납부시기 : 입주계약개시일로부터 240일 경과시점 시점
- 납부횟수 : 총 입주기간 중 240일 경과 시점에서 단 한번만 납부

나. 모집 보육실 사진 / *상기 이미지는 참고용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

구 분	보육실 호수	410호	임대면적	59.9㎡
			전용면적	29.6㎡ / 약 8.9평형
			정 원	제한 없음
보육실 사 진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구 분	보육실 호수	503호	임대면적	121.9㎡
			전용면적	60.2㎡ / 약 18.2평형
			정 원	제한 없음

보육실
사 진



구 분	보육실 호수	504호	임대면적	125.3㎡
			전용면적	61.9㎡ / 약 18.7평형
			정 원	제한 없음
보육실 사 진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구 분	보육실 호수	509호	임대면적	60.9㎡
			전용면적	30.0㎡ / 약 9.0坪형
			정 원	제한 없음
보육실 사 진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현재 입주 중이므로 참고사진 없음			

다. 지원내용

- 부대시설 : 소회의실, 중회의실, 대회의실, 제품촬영실 등 / 예약제로 운영
- 전용회선 : 인터넷 무료제공(KT)
- 주차시설 : 보육실 당 1대만 등록 가능 / 월 30,000원
- 보육서비스

구 분	내 용
멘토링	- 수요에 따른 분야별 1:1상시 멘토링 지원 - 원하는 멘토링 분야 선택가능
창업교육	-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IR자료고도화, 피칭, 투자 활동, 사업 검증 등 기업 경영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교육 지원
투자유치	- 마포투자로드쇼 실전 IR대회, 투자 상담회 등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투자자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 형성으로 투자유치 기회 확대
사업화지원	- 평가에 의해 사업화 지원금 차등 지원 (지식재산권, 인증, 홍보, 마케팅, 박람회 참가비, 브로슈어 제작 등 지원)
네트워킹	- 입주기업 간담회를 통해 기업 간의 협업을 위한 네트워킹 기회 마련 - 서울지역 타 센터와 연합으로 폭 넓은 네트워킹의 장 기회 마련
기타	- 이외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 지원 내용은 센터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위탁운영 기관인 서강대학교 창업지원단에서 운영

□ 입주절차

구 분	방 법	내 용	비 고
1차 평가	서류평가	· 입주 자격기준 적격여부 검토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진행 ※ 평가항목 - 인력/개발여건/기업안정성/산학협동 등	2배수 선발
▼			
2차 평가	발표평가	· PT발표 대면평가 진행 · 장소, 일정 등 추후 안내 ※ 평가항목 - 준비성/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	
▼			
최종선정	운영위원회 개최	· 운영위원회에서 신규입주 여부 최종선정	
▼			
결과발표	이메일 / 유선	· 이메일 또는 유선 최종선정 통보 ※ 선정 기업이 입주 포기 시 차순위자에게 입주기회 부여	
▼			
입주계약체결 및 입주	대면	· 입주계약서 체결 - 마포비즈니스센터 · 임대차표준계약서 체결 - 마포구시설관리공단	

□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7. 12.(수) ~ 2023. 7. 26.(수) / 15:00까지

나. 접수방법 : E-Mail 접수 [마포비즈니스센터 - smbc@sogang.ac.kr]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비 고
1. 신규입주 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 * 날인 필수
2.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참고 / * 날인 필수
3. 사업자등록증명원	- 관할 세무서 발행본
4.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법인에 한함 - 신청서류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폐쇄등기부 등본 있는 경우 제출
5. 4대사회보험 가입자명부	- 최근 한 달 이내 본
6. 인감증명서	- 개인 : 개인인감증명서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
7. 금융거래확인서	- 최근 한 달 이내 본
8.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회계사 또는 세무사 확인 본 * 기간 : 전년도 ~ 최근까지
9. 주주명부 사본	- 법인 기업에 한함
10.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 정부지원사업 협약서 제출
11. 기타 기업 실적 관련 증빙자료	- 사업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시 이메일 제목 및 파일명 예시 / 모든 파일은 하나의 압축파일로 만들어 제출 - 압축파일 명 :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 - 이메일 제목 :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 - 제출서류 파일명 : 1.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_신규입주 신청서 2.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대표자명_사업계획서 3.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4. 마포비즈니스센터 신규입주 신청_기업명(예비창업자)_인감증명서 :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부 심사용으로만 사용됨

□ 신청서 등 교부

구 분	URL주소	비 고
마포구청 홈페이지	www.mapo.go.kr	-
K-Startup 홈페이지	www.k-startup.go.kr	-
Bi-Net비아이넷 홈페이지	www.smes.go.kr/binet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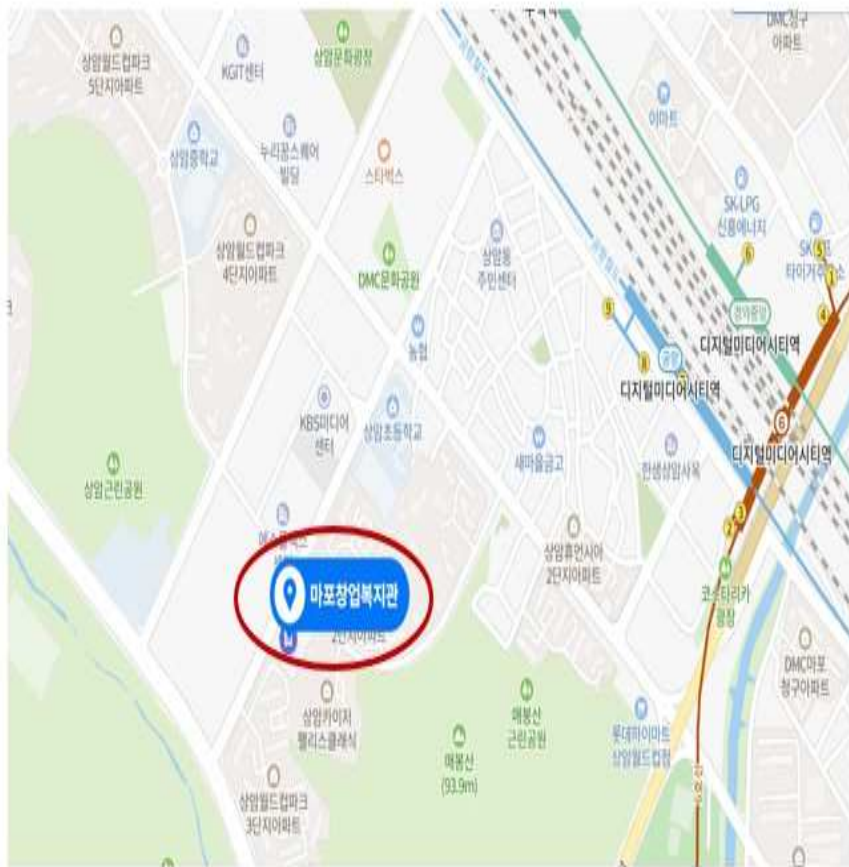
□ 문의처

구 분	기관명	연락처
문의처	마포비즈니스센터	070-7432-4031
		070-7432-4032
	마포구청 - 경제진흥과	02-3153-8573
	마포구시설관리공단	02-306-3515

□ 위치 및 찾아오시는 길

마포창업복지관 오는길 안내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18 (상암동) 마포창업복지관



□ 유의사항

- 이메일 수신 내역 기준으로 접수하며, 접수기간 이전·이후의 건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내부 심사용으로만 사용됨
-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도록 해당 근거를 반드시 첨부자료로 제출 하여야 함
- 타 창업보육센터에서 퇴거 조치 당한 기업은 신청 불가
- 입주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제출서류 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업에 있음
- 필요 시 사업계획서 상의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문에 위배되거나, 제출 자료의 내용을 허위 또는 고의 누락한 경우에는 접수반려, 선정취소, 강제퇴거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 기업 중 적합 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운영규정 준수

- 입주자는 입주기간 중 센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주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는 시정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시정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 가능
 - 사업전망이 불투명하거나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기업 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성공부담금과 관련한 제반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창업보육실을 전대 또는 양도하거나, 이중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
 - 소음 및 악취의 과다 발생, 선량한 미풍양속 저해 등으로 타 입주자의 사업 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경우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화의개시,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통지를 받은 경우
 - 창업보육실을 사전 신고 없이 3개월 이상 비울 경우
 - 센터의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기타 창업지원사업의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